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개정조례안은 '99.11.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11.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여성발전센터의 세입·세출상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여성발전센터의 일부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금액을 현실화함(안 제2조 별표)

- 기술교육수강료 및 생활문화수강료 :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3,000원 인상
- 수영수강료 : 금액 동일 징수기준을 월 12시간 이내에서 20시간 이내로 변경

○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센터의 수입 지출상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사용·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 및 징수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술교육 수강료와 생활문화수강료는 월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각각 3,000원(42.9%)를 인상하고, 보육료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2,500(50%)을 인상하고, 수영수강료는 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징수기준을 월 12시간 내에서 20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연장함.

생활문화수강료의 경우 1일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1시간 단축한 것은 사실상 인상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수영수강료는 시간을 오히려 늘려 수강료를 인하한 효과가 있다고 보임.

○ 사용료, 수강료 등의 인상으로 '99년 11월 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2억 4백여만원의 세입증대와 세출 증 자체수입 비중도 14.2%에서 18.2%로 개선이 예상됨.

'95년 1월 이후 조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실 소요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취볼 때 사용료 수강료 등의 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용료 등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수지 분석 내지 원가계산이 없이 타 시·도의 여성회관, 복지관 등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고로 하여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인상률, 인상폭의 결정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수강료 등을 납부한 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세입이 감소될 수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제고와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한 불평부당한 제도의 개선과 규제개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2.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